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2027년 대비)

2026-11-17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61	4.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앞에 추가		(4)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①항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신청의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딸린 사무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5)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②항 ~⑤ ②항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영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나.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 회사·영업소 또는 그 임원(영업소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발기인 또는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및 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2. 30.>	
55	**(4) 인가 결정**	**(4) 인가 결정(영 제 18조 제6항)**	**(4) 인가 결정(영 제 18조 제7항)**	**해당 부분은 교재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후 자료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교재의 수정이후의 내용을 출력하여 학습하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55	**(5) 변경 또는 폐지 신고**	**(5) 변경 또는 폐지 신고(영 제 18조 제7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변경 또는 폐지 신고(영 제 18조 제8항) 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2) 인가 신청 (영 제18조 제5항)	(2) 인가 신청 (영 제18조 제5항)	내용을 p53 네모박스 아래내용으로 이동 "(영 제18조 제5항)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56	**(3) 인가 결정 (영 제18조 제6항)**	**(3) 인가 결정 (영 제18조 제6항)**	**(3) 인가 신청(영 제18조 제6항)**	
56	**(2) 예탁금의 범위 (영 제18조 제8항)**	**(2) 예탁금의 범위 (영 제18조 제8항)**	**삭제**	
57	**(3) 보증금 반환 (영 제18조 제9항)**	**(3) 보증금 반환 (영 제18조 제9항)**	**(3)예탁금의 범위 (영 제18조 제9항)**	
57	**5. 기타**	**5. 기타(영 제18조 제10항)**	**5. 보증금의 반환(영 제18조 제10항)**	
164	제39조	제39조	영 제39조	
165	제39조의 2	제39조의 2	영 제39조의 2	
230	①변경승인	①변경승인(영 제30조 제 1항)	①변경승인(법 제 7조 제1항, 영 제30조 제 1항)	
231	2)예외		(내용추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17조 1항)	
232	2)예외(영 제 30조 제3항)	2)예외(영 제 30조 제3항)	2)예외(영 제 30조 제4항, 법 제 17조 2항후단)	
232	2)예외		(내용추가)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17조 2항후단)	
234	⑤고시	⑤고시	⑤고시 (영 제 31조 3항)	
255	③ 제1항에	③제1항에	(2) 2항 제1항에	
256	1.국가정보원 2.검찰청 사이	1.국가정보원 2.검찰청 사이	[시행일: 2026. 10. 2.]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258	전략물자 마지막 내용	내용 추가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4. 10. 8., 2025. 10. 1.>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36~37	1)사전검토 요청 2) 3)	(3-4장) (5장) (6장)	(3-4항) (5항) (5항)	
265	2) 자료 제출 요구	내용추가	후단내용추가(그 밖의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재 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내용만을 반영한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